

제24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2023. 10. 23.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53호로 2023년 5월 4일 차인영 의원으로부터 발의
되어 5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현행 조례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과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
는 조항을 마련하여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안 제6조)
- 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안 제7조)
- 다. 보고 및 검사 등(안 제12조)
- 라.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3. 10. 12.~ 10. 16.)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현행 조례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과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하여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실내공기질 권고기준과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교육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12조는 법 제13조에 근거하여 보고 및 검사 등의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 안 제13조에서는 법 제13조의3에 의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음.

○ 검토 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기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 더불어 권고기준 조항을 신설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며, 상위 법령에서 정하는 오염도검사기관에 검사결과를 의뢰하도록 하고, 조례에 따른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보다 전문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공기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 자료

1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시·도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하게 해당 시·도에 적용할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의2에 따른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그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대체·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2.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다중이

용시설의 소유자등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삭제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①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및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중교통차량 또는 대중교통차량 제작시설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중교통차량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축자재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 시험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 오염도검사 결과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한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결과를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검사결과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오염도검사를 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오염도검사 결과가 제5조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오염도검사기관) 법 제13조제6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인정을 받은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검사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자

제13조의3(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